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인증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변경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보증기간 내 자동차 제작 당시의 결함을 자체 시정한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114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에 관한 변경인증을 받고 변경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위반행위 종류 및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에 따른 가중 부과계수를 정하고, 자동차 제작자가 중요사항 외의 변경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변경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보고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차부터 3차까진 각각 500만원으로 정하며, 제작 당시에 발생한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차부터 3차까지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전기자동차: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나. 수소전기자동차: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다. 태양광자동차: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굴착기는 외부의 전원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2조의3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한다.

제60조의3제2항 중 “연도의 다음 연도”를 “날부터 2년 이내”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 본문 중 “해 9월 30일까지”를 “날부터 60일 이내에”로 한다.

제63조제3항제4호 본문 중 “법 제48조제1항·제2항”을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으로, “변경인증”을 “변경인증, 변경보고”로 한다.

제66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별표 12 제2호 나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아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1.0	1.0
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다만, 중요사항 외의 사항의 변경으로 인증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0.3

별표 13 제1호나목 자격기준란의 1)의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이상”을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으로 하고 2)의 “자동차정비기능사 또는 자동차검사기능사 이상”을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으로 하며, 확보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출 것
가) 1) 중에서 1명 이상
나) 2) 중에서 2명 이상
다) 2) 중에서 1명 이상과 3)에서 1명 이상

별표 13 제2호나목 자격기준란의 1)의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자동

차검사산업기사 이상”을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으로 하고, 2)의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이상, 자동차검사기능사 이상”을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나목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거목부터 어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너목(종전 거목)의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법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으로 하고, 같은 호 저목부터 무목까지를 각각 커목부터 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비고 중 “도목”을 “모목”으로 한다.

거.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보고를 한 경우	법 제94조 제1항제1호	500	500	500
처. 법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4호	100	100	1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3항, 별표 12 및 별표 15의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24일부터 시행하고, 제1조의

2제2항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과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전원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동식 굴착기에 관한 경과조
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작된 전동식 굴착기(법 제46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한 원동기를 사용한 굴착기에
한정한다)는 저공해건설기계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① ----- ----- ----- ----- ----- -----.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1. ----- ----- ----- ----- 다음 각 목의 자동차
<신 설>	가. 전기자동차: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신 설>	나. 수소전기자동차: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신 설>

2. 3. (생략)

② 법 제2조제1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같은 조 제13호의 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1. 전기건설기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건설기계로서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 <단서 신설>

2. (생략)

제52조의3(무공해자동차) 법 제58
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다. 태양광자동차: 태양에너지
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2. 3. (현행과 같음)

②

1. -----

-----. 다만, 굴착
기는 외부의 전원을 동력원으
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현행과 같음)

제52조의3(무공해자동차) -----

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제60조의3(과징금 산정방법 등)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6조의6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그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그 통지를 받은 해 9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⑤ (생략)

----- 전기자동차-----

-----.

제60조의3(과징금 산정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날부터 2년 이내-----

-----.

③ -----

날부터 60일 이내에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63조(권한의 위임) ①·② (생략)	제63조(권한의 위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 ----- ----- --.
1. ~ 3의3. (생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4. <u>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u>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4. <u>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u> ----- <u>변</u> <u>경인증, 변경보고</u> ----- --. ----- -----.
5. ~ 9. (생략)	5. ~ 9. (현행과 같음)
제66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제66조(업무의 위탁) ①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의2.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u> <u>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u> <u>확인</u>
4. ~ 10. (생략)	4. ~ 10.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6879